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#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討報告書

【우경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

##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檢討報告書

#### 1. 경 과

의안 제142호로 2023년 5월 4일 우경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·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나. 자동심장 충격기의 정비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항 신설 (안 제7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23. 5. 1. ~ 5. 6.)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6조(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등)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 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·관리계획(이하 "응급의료 지원계획"이라 함)을 매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, 해당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·홍보 및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·관리·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함.
- 안 제7조(장비의 관리)에서는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구청장이 장비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비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서는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설치·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따라서 본 조례안은,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. 응급의료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"심폐소생술

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"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"심폐소생술 교육 계획"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기에 응급의료지원계획의 수립 시 두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참 고 자 료

###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- 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**제16조(재정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 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24.>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-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1, 12, 21.>
  - 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 - 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  - 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  - 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  - 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  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 - 6의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
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-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〈신설 2016. 12. 2.〉
-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5. 14., 2016. 12. 2., 2021. 12. 21.>
-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2. 21.>
-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5. 14., 2016. 12. 2., 2021. 12. 21.>

###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**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**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- 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- 2. 응급장비 사용교육
- 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 · 비치
-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8. 19.>
-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 3. 19.>